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홍천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90,995	11,969	11,788	15,920	43,423	4,654	1,727	0	1,516
국비	42,569	6,895	4,426	6,663	24,183	402	0	0	0
시·도비	10,872	838	631	3,786	4,808	808	1	0	0
시·군·구비	37,554	4,236	6,731	5,471	14,432	3,444	1,726	0	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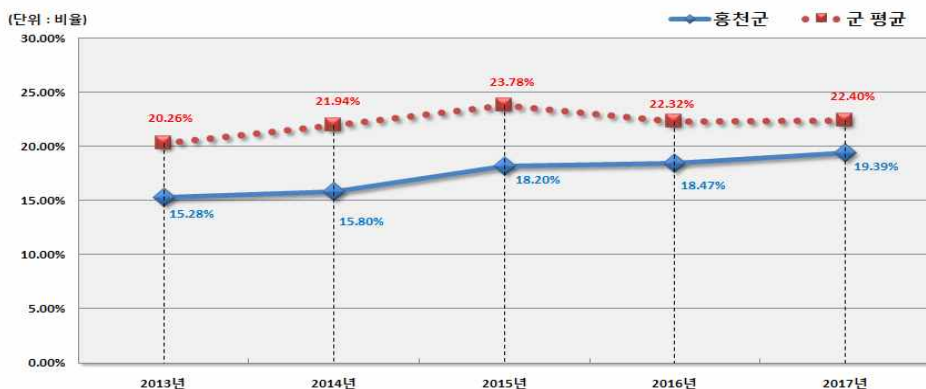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68,243	410,982	410,071	433,053	469,345
사회복지분야(B)	56,274	64,918	74,650	79,982	90,99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28%	15.80%	18.20%	18.47%	19.39%
인구수(C)	70,638	70,451	70,336	70,076	70,34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97	921	1,061	1,141	1,29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3~2017년 사회복지분야 세출결산액 평균 증가율이 12.8%로 사회고령화,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확대,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 추진 등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가량 낮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흥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69,345	35,873	7.64%	
민간경상보조 (307-02)		9,386	2.00%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502	0.32%	
민간행사보조 (307-04)		1,190	0.2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7,948	1.6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00	2.02%	
민간자본보조 (402-01)		6,347	1.3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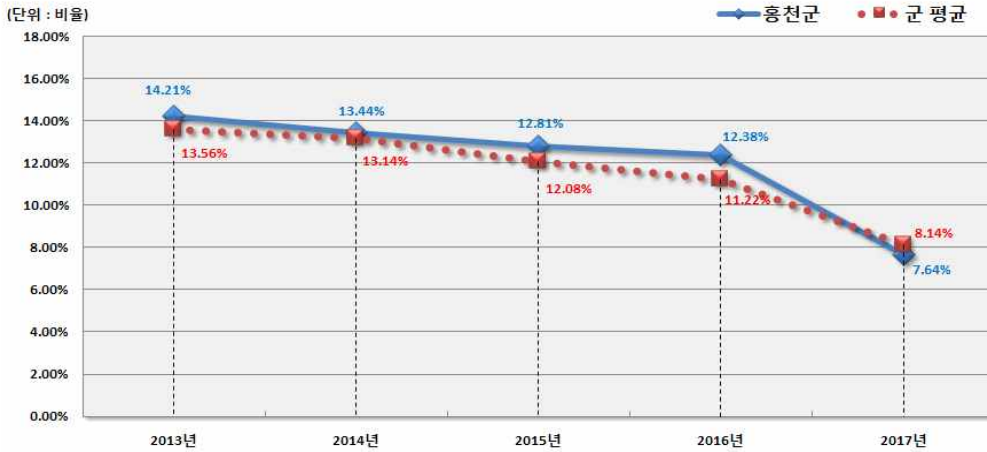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8,243	410,982	410,071	433,053	469,345
지방보조금(민간)	52,332	55,232	52,523	53,628	35,873
비율	14.21%	13.44%	12.81%	12.38%	7.64%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 2016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402-01)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2017년도에 402-01(자체 재원), 및 402-02(이전재원)으로 구분되면서, 이전재원 부분이 현황에서 제외되어있음. 2017년도 민간자본보조금(402-02, 이전재원)은 15,504백만원이면 이 부분을 포함한 보조금 총액은 51,377백만원이며 비율은 10.95%임.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별 지 작 성(p148 ~ p158)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별 지 작 성(p159 ~ p161)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 지 작 성(p162 ~ p177)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별 지 작 성(p179 ~ p229)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홍천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9,345	2,284	0.4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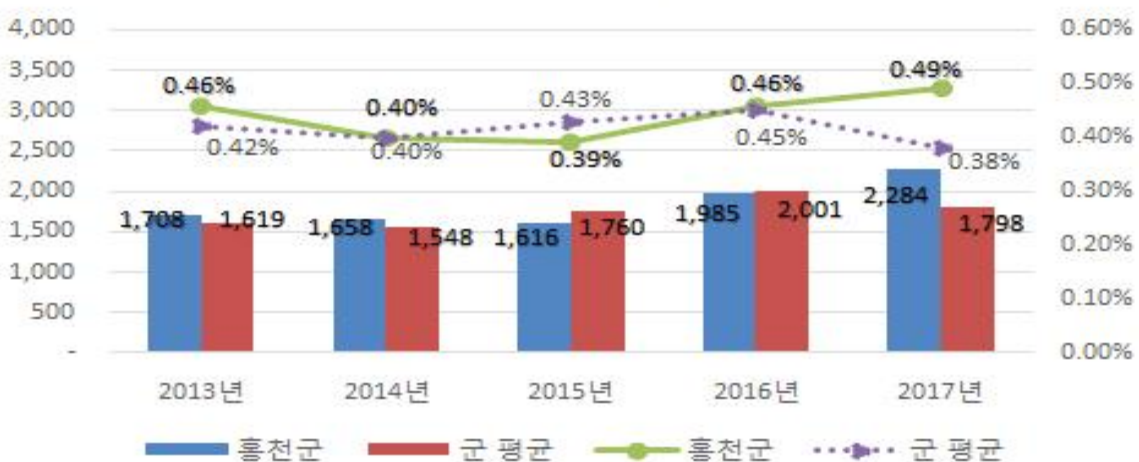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68,243	410,982	410,071	433,053	469,345
행사·축제경비	1,708	1,658	1,616	1,985	2,284
비율	0.46%	0.40%	0.39%	0.46%	0.49%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여건에 따라 국민의 복리 및 문화·예술 여건증진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공연 실시,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라꽃 무궁화 축제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행사경비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 임.